

#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(안)

○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기준 4개 영역 총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

- 교육시설 20, 교수요원 30, 교육과정운영 40, 운영경비조달 10

○ 단, 각 항목별 평가에서 1개 이상 “불가” 판정받은 경우, 총점 70점이상도 불합격

영역 (배점)	항목 (배점)	평가기준	배점	평가점수
교육 시설 (20)	가. 교육 장 (10)	강의, 실습 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의 확보 (교육인원 30명 기준) - 강의실 최소면적: 60m <sup>2</sup> - 옥내 실습실 최소면적: 200m <sup>2</sup> - 옥외 실습장 최소면적: 750m <sup>2</sup> - 공구 및 재료실 최소면적: 20m <sup>2</sup>	우수(10) : 모두만족 불가(0) : -	
	나. 교육 장비 (10)	1) 실습을 위한 목재 제재·가공 기본 장비와 안전 시설 확보 (교육인원 30명 기준) - 원형톱, 띠톱, 각도절단기, 전동대패, 흙대패, 휴대 용전동루터, 전동드릴, 전동샌더, 전동그라인더, 전동각끌기, 에어타카, 공기압축기, 체인톱, 개 인별 공구세트, 개인별 안전장비세트 ※ 장비별 용도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장비 가능 2) 교육보조재의 확보 - 강의실 내 설치된 빔프로젝터 및 교육전용 개인별 컴퓨터, 설계실습용 제도대, 건축설계 소프트웨어	우수(10) : 모두 구비 불가(0) : -	
교수 요원 (30)	자격 (30)	교수요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 1) 목재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목재분야 자격소지자 3)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 제33조에 따른 목재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소지자 4) 법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5) 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- 상기 조건의 1), 2), 3), 5)의 조건에 건축 관련 분야도 포함 - 교수요원 정원은 5명으로 하되, 자체 전임교수 최소 4명이상 보유 - 전임교원 1인 추가 시 5점 추가	전임교수 6인 : 30 전임교수 5인 : 25 전임교수 4인 : 20 전임교수 4인미만 : 불가	

영역 (배점)	항목 (배점)	평가기준	배점	평가점수
교육 과정 (40)	가. 교육 구성 (15)	1) 프로그램의 제목, 목적·목표, 기대효과 - 프로그램의 제목, 목적·목표, 기대효과 제시자료 평가 2) 프로그램의 개요(장소·인원·대상·시간), 준비 물, 진행과정, 진행의 유의사항 - 프로그램의 개요(장소·인원·대상·시간), 준비물, 진행과정, 진행의 유의사항 제시자료 평가 3) 프로그램 전체 일정표 - 프로그램 전체 일정표 평가 4) 프로그램을 위한 교재 -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재 ※ 교육과정(안)의 교과목을 기준으로 평가	우수(15) 양호(11) 보통(7) 미흡(3) 불가(0)	
	나. 교육 운영 (20)	1)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- '운영경비조달' 항목과 중복되므로 평가에서 제외 2)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·장비 등 - 교수요원(외부 강사 포함) 운영계획 등 평가 -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상주 행정인력과 장비 확보 평가 - 과거 교육운영 실적 등 평가 3) 교육 대상 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등 홍보계획 - 교육 대상 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등 홍보계획 평가	우수(20) 양호(15) 보통(10) 미흡(5) 불가(0)	
	다. 안전 관리 계획 (5)	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(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) - 안전관리 대책 수립여부 및 교육생 보험가입여부 등 평가	우수(5) 양호(4) 보통(3) 미흡(2) 불가(0)	
운영 경비 조달 (10)	운영 경비 조달 (10)	교육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 및 예산의 확보 - 교육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와 예산 확보 또 는 확보계획 수립 여부 등 평가	우수(10) 양호(8) 보통(5) 미흡(2) 불가(0)	